

대청·충주댐 지역에 대한 정책개선 건의 (안)

의안
번호

422

제안년월일 : 1994. 12. 26

제안자 : 댐관련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대청댐과 충주댐 주변지역의 균형개발과 거주주민의 균등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재정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댐주변지역 현안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함

3. 건의내용

- 충주댐 공역상수도 시설비 국고지원
- 댐주변 지역 재정 손실 대책강구
- 댐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 환경기초시설 및 운영비 국고지원
- 대청광역상수도 취수탑 본류 지역 이전

대청·충주댐지역에 대한 정책개선 건의(안)

평소 국가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지역발전에도 각별하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민자당 정책의장 민주당 정책의장 께 150만 도민과 더불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대청댐과 충주댐에 관련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댐지역에 대한 정책개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청댐과 충주댐건설 사업으로 누대를 살아온 고향이 물속에 잠기고 농경지가 수몰되는 아픔이 있었으나 주민들은 이 댐이 완공되면 우리고장은 호반관광지로 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댐이 완공된후 십수년이 지난 오늘 댐주변지역은 개발은 커녕 각종 법령에 의한 중첩된 규제로 지역의 낙후는 심화되고, 지방세 세입원은 대폭감소되어 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약해지는 상태에서 수질보호를 위한 환경기초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만이 더해 갈뿐 혜택은 없어 주민의 피해의식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댐주변지역 주민은 수질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땅히 보상차원에서의 지원과 각종규제를 완화해서 민원을 해소시킬 책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도의회에서는 지난해 댐관련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들을 중앙관련부처를 순방하면서 건의와 협의를 해보았으나, 지방의회 영향력의 한계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기에 국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정책위 의장님께서 대청댐과 충주댐 조성으로 인한 향토의 어려운 처지를 깊이 헤아리셔서 다음 건의를 수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주댐 광역상수도 시설비 차치단체 부담경감입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앞으로 시행되는 전국의 광역상수도 사업은 물을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건설비를 부담하고 그 재원은 토지 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특별회계에서 용자지원키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1일 25만톤의 시설용량인 충주댐 광역상수도 사업에 있어서도 총사업비 850억원 중 급수지역인 충주, 진천, 괴산, 음성, 중원등 5개 시·군에 통합정수장 건설비 310억 6천만원은 지방비에서 부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 누증과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지방비 분담 제시액을 기완공된 광역상수도 사업과 같이 전액국고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수차건의한 바 있고, 도의회에서도 지난 11월 9일 건설부 수자원국장을

방문하여 견의해 보았으나 별성과를 보지 못하였아오니 이 현안이 해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댐주변 지역 재정손실 대책입니다.

본도는 댐건설로 인하여 170㏊의 농경지와 11,180세대가 수몰된데 이어 매년 5% ~ 6%의 인구가 감소되어 댐주변 지역의 기초자치 단체는 지방세 수입원이 줄어들어 재정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번 170회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하수는 1㏊당 10원에서 음용수 100원, 온천수 50원, 목욕용수 1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나,

본도의 년간 세수추정액은 1,300만원에 불과하여 지방재정에 별 도움을 주지못하므로 발전용수의 세율을 현행 1원에서 10원으로, 지하자원은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3으로 상향조정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주실것과 지난 9월 22일 본도의회에서 민자당 정책의장님께 견의드린바 있는 “자원 이용세”를 목적세로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댐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댐주변 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청정수역의 보전이라는

대명제아래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이미 지정되었거나 잠정적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청댐 지역은 90년 7월 환경처고시 제90 - 16호로 상수원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으로 고시되어 대청댐 주변 289㎢에 이르는 군북국민관광지 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충주댐 지역 역시 2급수 수질이 1급수로 개선될때까지 중원, 제천지역 5개 지구 137㎢에 관광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들 양개댐 주변 지역은 낙후지구로 계속방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북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하여는 완벽한 오수처리시설 계획수립을 전제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충주댐 주변에 대하여는 1급수 수질개선전 이라도 지역개발여건이 충족된 지역에 한하여 환경 오염이 적은 업종과 오염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업종은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환경기초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대책입니다.

수질보전을 위한 충주댐 권역내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이 모두 6개소로 넌간 시설운영비만도 30억 6,8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충주댐은 광역상수원도 아니고

특별대책지역도 아니므로 충주댐 유역 자치단체와 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공동분담케할 근거가 없어 국고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오니 이 문제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청광역상수도 취수탑 본류지역 이전입니다.

대청호 광역상수도는 50만 청주시민과 12만 청원군민의 생명수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천안, 온양, 조치원에까지 급수하고 있는 수원이온데 취수탑 위치가 대청호 만곡부에 위치해 있어 호소수의 장기간 정체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으로 물에서 이취가 발생하여 가정에서는 수돗물을 불신·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 5월까지 대청호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중이므로 청주시민과 청원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취수탑 이전을 2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본류지역으로 이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12월 3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